

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2. 9. 1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8월 26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8월 2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89회 제1차정책회 제4차위원회 (2002. 9. 13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과장 김 기 석

가. 제안이유

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지도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아 구청장이 수행하던 국내·외 여행업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던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내용이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 되면서 관련 법령에서 과징금의 종별과 금액, 징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건은 국내·외여행업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

조례는 1995. 9. 26 조례 제304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였으나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각각 1999. 1. 21과 1999. 5. 10 전문개정되면서 동 조례의 내용이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기적으로 조례정비가 늦은 감은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존치 실익이 없는 자치법규는 조속히 발체하여 정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2.8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지도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아 구청장이 수행하던 국내·외여행업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던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내용이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서 과징금의 종별과 금액, 징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

3. 근거

- (1) 관광진흥법(2002.2.4 법률 제6656호)제35조 등
- (2) 관광진흥법시행령(2002.4.27 대통령령 제17589호)제35조 등